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활동을 위한 건축사업무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사자격의 심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의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을 종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2010년말까지 법인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으로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

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 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u>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①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9. (생 략)</p> <p>〈신 설〉</p> <p>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p> <p>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목적) -----「<u>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u>」-----</p> <p>-----.</p> <p>제2조(적용대상) ① 「<u>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p> <p>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p> <p>〈삭제〉</p>	<p>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p> <p>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p> <p>5. · 6. (생 략)</p> <p>③(생 략)</p> <p>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u>환경정책기본법</u>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3. 「<u>노인복지법</u>」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p> <p>4.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p> <p>5. · 6.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3조(업무의 위탁)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p>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지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켜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으로, “연면적”을 “연면적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장외”를 “주차장 외”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을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 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1만5천제곱미터이상”을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람장에 한한다”를 “관람장만을 말한다”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

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으로, “설치제한기준”을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00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시설면적/100m ²)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2.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객리 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시설면적/150m ²)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속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시설면적/200m ²)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m ² 당 1대 (시설면적/350m ²)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 1대에 150m ²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m ²)/100m ²]]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m ² 당 1대 (시설면적/400m ²)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시설면적/300m ²)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 · 수녀원 · 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 전신전화국 ·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 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 · 쇼핑센터 ·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 전시장 · 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 · 훌 · 타석 ·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

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 --- 연면적 중 ----- ----- . ----- ----- 주차장 외 ----- ----- 별표 1에 따른 -----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 ----- ----- . ②·③(생략) 제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람장에 한한다) · 위락시설 ·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람장만을 말한다----- ----- ----- 제6조에 따라 ----- ----- ----- ----- ----- ----- 범위에서 ----- -----
3. (생략) ②·③(생략)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 단서에 따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2. (생략)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 5. (생략) ②·③(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